



토론: 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역할과 잠재리스크 (by 구분성)

강경훈
(동국대 경영학과)

예대업무의 형태가 아닌 지급결제 분리

- ❖ 결제자금의 일시적인 저장과 운용하는 수탁관리자 기능(구매자), 그리고 상거래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관리자(판매자) 역할을 영위 (p.11)
 - 전자금융업,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하는 BigTech 또는 FinTech → 고객자금의 외부 예탁 및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 (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)
 - 전자금융거래청산업과 금융결제원 (금융위원회 vs. 한국은행)
 - “금융결제원은 중앙은행의 분신이 아니다” (2021.1.3, 한국경제신문 기고문)
 - Another goldsmith anecdote?
 - 금화의 warehousing service → fractional reserve banking
 - 지급결제와 대출업무 간의 시너지
 - Kashyap, Rajan & Stein (2002), Myers & Rajan (1998) 등

BigTech의 대출업무

❖ Platform을 영위하는 BigTech의 연계 대출, 협업 형태의 대출 (p.12, 20)

-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상거래 정보 등 hard information에 기반한 대출업무 vs. 예금업무를 통해 수집한 정보(and/or soft information)에 기반한 은행의 대출업무
 - 어떤 정보가 더 강력한가?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플랫폼 업체의 데이터 판매 또는 제휴
- 차입자(기업)에 대해 다양한 통제(규율) 수단: 금융거래 제약 + 상거래 제약(e.g. 알리바바)
- 차입기업 또는 인터넷 벤더들의 데이터 소유권은?
 - MyData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정보보호 의무가 현저히 낮은 인터넷 벤더 등 기업의 데이터를 플랫폼이 공유하는 방안 (Tirole: Uber에서 운전자 이력 데이터를 Lyft로 이전할 수 있어야)
 - (전통적인) information monopoly 문제와 multiple channels for financing

금융중개기능의 위축 문제와 금산 복합 문제

- ❖ 핀테크의 활성화는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등 중개기능의 양분화를 초래할 소지 (p.18)
 - 은행의 예대융합 기능 축소 및 이에 따른 자산변환(asset transformation) 기능 위축
 - MMF는 상업은행을 대체할 수 있나? 시장을 통한 금융중개 vs 은행을 통한 금융중개
- ❖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업체의 금융업 진출과 은행의 플랫폼업 부수업무 허용
 - 향후 두 부문 간에 다양한 형태로 제휴, 결합이 발생할 전망 → '신한은행'과 '요기요'의 결합은 누가 심사해야 하나? (공정위 vs. 금융위)
 - IT와 금융업이 결합된 복합금융그룹의 공정경쟁 감독 vs. 금융안정 감독